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[별지 제18호서식] <개정 2025. 8. 28.>

(앞쪽)

제 호

테마파크업 신고증

1. 영업소 명칭	
2. 소재지	
3. 영업의 종류	
4. 대표자	
5. 대표자의 생년월일	
6.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수(종수)	
7. 영업기간 (6개월 미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	

「관광진흥법」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
특별자치도지사·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210㎜×297㎜[백상지(150g/㎡)]

(뒤쪽)

신고번호 :		
변경 및 처분사항		
연월일	내용	확인[인]